

# 10-58 대학원 연구성과 지원 내규

2014. 3. 1. 제정

2024. 7. 2. 개정

주무부서 : 대학원교육지원팀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성과 지원금(이하 “본 지원금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<개정 2024. 7. 2.>

**제2조(지원 대상)** ① 지원 대상은 본교 대학원 재학생과 연구등록생으로 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②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원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한 자로 본교가 지정한 원칙에 의거 등록금을 수납한 자를 의미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③ 연구등록생이라 함은 대학원 석사 혹은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연구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한다. 다만, 박사 학위 과정생은 수료 후 첫 번째 연구등록을 한 자에 한해 졸업 전까지 연구등록생으로 간주한다.

**제3조(연구 실적)** 다음 각 호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한해 연구 실적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1. JCR (SCI, SSCI, A&HI, SCI-E) 등재 국제학술지
2. JCR (SCI, SSCI, A&HI, SCI-E) 등재 국제학술지 중 온라인으로 출간되는 학술지
3.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
4. 한국연구재단 등재 국내학술지

**제4조(신청 자격)** 본교 소속의 대학원생으로 제3조(연구 실적)의 제1저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(겸임 교수 포함)와 공동 연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교수를 제외한 제1저자이어야 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**제5조(신청 방법)**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대학원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1. 연구성과지원제도 신청서(온라인 게재 연구실적인 경우, 신청서에 온라인 게재 사이트 주소 명기) 1부
2. 연구실적(원본, 별쇄본 및 사본) 1부
3. 제1저자 확인서 1부 (신청자가 제1저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제출)
4.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1부

**제6조(신청 제한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1. 연구 실적이 발간된 일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
2. 한 학기(6개월) 단위로 4편 이상 신청을 한 경우
3. 성적 우수 장학금, 연구 조교 A 등 대학원생에 직접 지원을 하여 작성된 연구실적의 경우

**제7조(심사)** 본 지원금에 신청한 연구 실적 심사를 위해 교수심사위원회를 둔다.

**제8조(지원금 지급)** ① 신청한 연구실적의 등급(학술지 등급, Impact Factor 등)에 따른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대학원에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집행한다.

② 계열은 본교 대학원 입학 시 모집계열을 기준으로 하고, 지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. <개정 2021.04.06., 2024. 7. 2.>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1급지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급지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문사회<br>계열<br>예체능<br>계열 | 학술지  | SSCI, A&HCI 등<br>국제(공인) 학술지 |             | SCOPUS,<br>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액 | 상위 5%*                      | 2,500,000원* | 500,000원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10%*                     | 2,000,000원*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20%                      | 1,500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50%                      | 1,200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50% 미만                      | 1,000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연계열<br>공학계열<br>의학계열    | 학술지  | 상위 50% 이내<br>JCR 등재 학술지     |             | 상위 50% 초과<br>JCR 등재 학술지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액 | 상위 1%*                      | 2,500,000원* | 500,000원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5%*                      | 2,000,000원*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10%*                     | 1,500,000원*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20%                      | 1,200,000원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상위 50%                      | 900,000원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4단계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함

③ 연구비 지원 사사가 포함된 연구 실적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지원 기준의 50%만 지원한다.

**제9조(지원금 회수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지급된 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7. 2.>

1. 허위로 성과물을 제출했을 경우

2. 표절이나 조작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게재를 취소했을 경우
3. 신청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작성을 하였을 경우
4. 본 제도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자가 가명 혹은 명의를 도용해 지원한 경우

부 칙

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04.06.>

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 7. 2.>

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